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개선하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와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1)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를 영구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파기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
- 2)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파기 방법에 추가함

나. 출연사업 위탁근거 정비(안 제62조제3항 개정)

- 1)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의 필요성이 증가
- 2)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전문기관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별표1의3·별표1의5·별표2 개정)

- 1)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경미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도 1/2 범위내 감경만을 규정하고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감경 및 면제 근거 정비 필요
- 2)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근거를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조제1호”를 “법 제13조제1호 및 2호”로, “교육·홍보”를 “교육·홍보,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 및 연구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협력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8. 법 제28조의3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

별표 1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다목에 따라 가중·감경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목에 따라 가중·감경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중 “위한”을 “위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 본문 중 “산정한다”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산정된 과징금”을 “결정된 부과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다목에 따라 가중·감경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목에 따라 가중·감경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5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다목에 따라 가중·감경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목에 따라 가중·감경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의5 제3호 중 “기준과”를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줄일”을 “줄이거나 면제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줄일”을 “줄이거나 면제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u>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u> <u><신 설></u> <u><신 설></u> 2. (생략) ② (생략)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 ----- ----- -----. 1. ----- <u>경우</u> <u>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u> <u>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② (생략)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u>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u>	제62조(권한의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u>

1. <u>법 제13조제1호</u>에 따른 <u>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u> 2.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④ (생략)	<u>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1. <u>법 제13조제1호 및 2호</u>----- ----- <u>교육·홍보,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u> 2.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7조의8제6호</u>에 따른 <u>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 및 연구 지원</u> 7. <u>법 제14조</u>에 따른 <u>국제협력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u> 8. <u>법 제28조의3</u>에 따른 <u>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u>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3055